



두엄누리회보 제 47 호

2007년 5월 31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퇴비(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일시: 2007년 5월 4일 금요일

장소: 농림부 소회의실

주재: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안건: 퇴비(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선 방안

지난해 농협중앙회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각 분야에서 개선요구가 제시되었던 일부 사안에 대하여 농림부가 사전 조사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개선 방안 의견 조희 결과”를 놓고 회의가 진행 되었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장명철 사무관의 설명으로 시작된 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 되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으로는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규모가 연평균 12.8%씩 증가하였으나 전체 농가 사용량에 43%에 그치고 있다. ▲ 이는 화학비료 보조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우리 부서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자체지원과 농협 환원사업 등 여러 기관의 분산지원으로 지역차이가 심함. ▲ 일부 지역의 지원 받은 물량이 미 사용된 곳도 있었다. ▲ 가공거래로 보조금 횡령 사고가 발생. ▲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지원금을 내



세워 관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여 과다한 물량배정을 받은 업체는 반제품 구매로 억지물량을 생산해 불공정거래시비와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 ▲ 이물질이 첨가된 건설폐목 톱밥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 논란 문제. ▲ 사료 원료로 수입된 유박류의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 ▲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그린 퇴비의 차등지원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현재의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지자체와 농협으로 이원화 하고 보조방식은 민간보조에서 지자체 보조로 전환(예산과목 변경) △비료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농가 판매 등)은 종전과 같이 농협이 수행 하고 보조금 예산은 시. 군. 구에서 집행 △지자체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정비율을 지방비로 추가 부담(실정에 맞게 차등 부담 가능) △지원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보조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불공정거래 사례로 많이 건의된 관내 생산업체만 공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공급업체의 생산능력을 검증하여 그 능력 내에서만 공급하도록 함 △비료 단속은 공장위주에서 유통비료 위주로 연중실시 함 △사용원료의 파악을 위해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작성 등을 의무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요건을 발효시설 등 필수 시설을 구체화 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산능

력 관리제도를 더 다듬어 내실화하고 위반 시는 강력히 처벌 △위반업체가 단순히 명예변경만 하여 편법으로 쉽게 재 지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 기준을 생산업 등록 기준에 맞춰 시설 및 장소까지 확대 적용 △그린퇴비 지원 단가는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고품질 생산 유도 △유기질비료 지원은 축소 내지는 폐지 검토 등의 내용이 거론되었다. 이날 유기질 비료업체인 효성농산 관계자는 유박비료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 품목에서 제외 시킨다면 생산업체 쪽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그간 사용해오던 농가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므로 그대로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또 퇴비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린 퇴비도 원료로 수입 유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원료를 쓰는 유기질 비료는 안되고 그린퇴비는 지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다음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시, 도 관계공무원의 발언내용이다.

대전직할시 관계자: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지방비 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원 마련이 쉽지 않아 포기한 적이 있다. 만약 이렇게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지방비 자원 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충청남도 관계자: 체계변화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축소는 반대이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유박류의 유기질 비료를 선호하고 있으나 ha당 60~70만원이나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원되던 금액을 없앤다면 사용농가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안성시 관계자: 체계변화에 찬성한다. 그동

안은 이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인데 모든 업무를 농협에서 주관하다보니 농가에서는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보조 대상 제품도 농협을 통한 제품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판매 제품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는 26개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비 15억원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다. 꼭 농협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은 지향했으면 좋겠다. 일반업체 제품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또 유기질 비료 지원 폐지는 안된다고 본다 유기질 비료는 퇴비보다 비료 효과가 높아 많은 농가가 원하고 있어 없애서는 안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사한데 토양개량제사업은 전산화 되어있다. 이 사업도 전산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농촌진흥청 안인 농

업자원 과장: △원료사용기준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건설폐목톱밥의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연계하여 철저히 막을 것이다.

이를 위해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제도를 부활시킬 예정이다.

△비료단속 시 유통제품에 대한 검사는 참고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및 단속에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퇴비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부산물 비료협회와 유기비료 조합 양 단체를 통해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 농협납품지정업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생산능력 검증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겠다.

△유박류의 유기질비료는 사료로 수입하여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업체가 펠렛화 하여 생산하는 그린퇴비가 발효를 시키지 않고 상품화 하는 것은 공정규격상 위반행위이다. 발효시키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원량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조회를 한 결과도 그렇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문제점과 등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시키겠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반대 의견이 심하므로 좀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농협 계통외에 시판제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시키자는 것은 업체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고 본다. △지방비 지원을 한데 묶는 방법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 모든 농민이 고르게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으나 재정이 빈약한 자치 단체는 그나마 정부 지원까지도 받을 수가 없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회의 도중 예고 없이 박흥수 농림부 장관이 참석하여 퇴비의 유통 및 금액 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그간 우리가 힘들게 주장한 축분퇴비 대복지원에 대해 이는 남한실정으로 보아 실현시켜야 할 사안이라며 꼭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일의 당도 증진 특히 제주도 감귤의 당도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농가가 원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생산능력 추가 조사 실시

지난 5월2일부터 '06~'07년 신규로 참여한 업체의 생산시설과 지난해 생산시설 확장공사를 실시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05년과 '06년에 걸쳐 실시한 생산능력 실태조사는 '06년 말 농협검수 집계량에 따라 금년 보조 사업 시행 이전에 적용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주문량이 많아 미리 생산시설을 확충한 업체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년 초에 실시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현장 확인은 농협과 유기조합 우리 협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확인하여 실시하는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이번에야 실시된 것이다. 유기조합의 경우는 이 조사업무를 같이 했던 임원진이 지난해 말 모두 바뀌는 바람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합동으로 확인 조사를 다니던 것을 각각 회원사를 바꾸어 크로스체크를 하기로 하고 5월2일부터 실시하여 26일 총남을 마지막으로 전국에 '06~'07년 신규로 참여한 유기조합소속 신규업체 38개소를 모두 확인하였다. 결과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의 후 사업 주관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 납품업체 품질검사 관련 시료 미 발취업체 제제기준 변경

지난 5월15일 농협중앙회에서 농협납품업체 운용기준과 관련 연간 2회 실시하는 품질검사 시료채취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있었다.

현재 운용기준에는 지정업체 해지 조항제(2)번에 추천기관, 본회 및 행정기관 주간 품질 검사에 대하여 불응(시료미발취 등):1회-1년, 2회-2년(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료발취 관계자(농협 및 지정분석기관 용역업체 관계자)가 공장에 시료발취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완제품 포장에 없었을 경우 완제품 미비로 시료 발취를 거부하고 후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왔다. 하지만 그린퇴비와 일반 퇴비를 모두 등록한 업체 일부가 한 품목은 아예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품목 지정유지만 하는데 편법 이용하고 있고 제품이 공정규격에 미달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납품 실적이 있음에도 이 조항을 악용하여 품질관리를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완제품 미비와 이유 없는 생산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시키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2007년도 상반기품질검사 시료 미발취 업체는 전체70개 업체나 되며 소속 기관별로는 농협이 17개소, 부산물비료협회가13개소, 유기조합이 40개소이었다. 이 바뀐 규정의 적용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협납품을 하기 위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는 시료 발취에 응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퇴비 품질검사 기준에 부숙도 기계 판정 결과 적용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해 부숙도 측정을 기계적 측정방법으로 검정하게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농협납품업체 운용기준 제8조(품질관리)에 기계적 부숙도 측정법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적용시기는 '07~'08년말 까지는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정식적용은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부숙(腐熟)도란 원래 우리나라 표준 단어에는 없는 단어인데 한자의미대로 해석한다면 적당히 썩고, 익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발효의 개념으로 퇴비 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번에 농협에서 부숙도 측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기계는 강원대학에서 개발 제작한 기계로 그 원리는 완제품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NH₃) 및 이산화탄소(CO₂)의 발생량을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유기성 물질의 숙성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져야 하므로 공통되게 사용되는 방법은 없었다. 현재 공정규격에서 사용되는 유기물대 질소의 비가 이 부숙도의 측정수단으로 사용되는 항목인데 이 또한 부숙 과정 없이 성분의 비율만 맞으면 부숙도의 기준을 쉽게 맞출 수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었다. 이는 수분조절을 위해 목질부 등의 탄소원이 사용되었을 때 탄소원이 분해 되면서 질소질을 소비함으로 탄소(유기물)의 분해도에 따라 그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부숙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탄소원을 사용하더라도 부숙과정 없이 질소질을 높여주고 발효가 진행되지 못하게 수분만 없애주면 인위적으로 그 비율은 쉽게 적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던 것이다.

이 기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질소의 분해 과정에서는 질소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무기화 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 등의 목질부(유기물, 탄소원)는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성하므로 이 두가지를 모두 측정하여 발효도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질소질이 높고 수분이 없는 유박종류의 부숙도를 간단한 전 처리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